

<p>○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p> <p>2.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p> <p>나. 회부일자 : 1997년 10월 20일</p> <p>다. 의안번호 : 제900호</p> <p>라. 상정일자 :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97.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p> <p>3. 제안설명요지(환경관리실장 : 탁병오)</p> <p>□ 제안이유</p> <p>○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얻어 육군 제3182부대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시행하려는 것임.</p> <p>□ 주요골자</p> <p>가. 1936.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의 북한산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입야 8필지 1,419,377㎡(429,360평)를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중에서 산 1-4번지 일부인 33,057㎡(10,000평)에 대해서는 육군 제3182부대 소속 백마유격장에서 훈련장의 숙영지로 사용키 위하여 무상사용신청을 하였음.(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p> <p>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지방재정법 제27조)</p> <p>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p> <p>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얻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여 육군 제3182부대에 무상사용토록 하기 위한 내용임.</p> <p>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령)</p> <p>○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의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p>	<p>위치한 입야 8필지 1,419,377㎡(429,360평) 재산중에서 산 1-4번지 일부인 33,057㎡(10,000평)로, 군의 발전과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격훈련장의 숙영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육군 제3182부대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와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p> <p>○ 본 시유재산은 1936.4.1.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1988.5.12.부터 3년 기간으로 상기부대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바 있으며, 1990.11.6. 서울시에서는 유상전환을 요청한 바 있으나, 1997.7.9. 상기부대로부터 일부입야에 대하여 매각토록 협조의뢰한 바 있음.</p> <p>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입상이 양호한 녹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서울시공유재산관리지침(공유재산매각의예)에 의거 매각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고 무상사용허가코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임.</p> <p>○ 육군 제3182부대에서는 매입을 원하고 있으나 무상사용허가마저 안 될 경우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재산활용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재산이므로 무상사용허가토록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p> <p>5. 질의 및 답변 : 생략</p> <p>6. 소수의견 : 없음</p> <p>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 16명, 만장일치)</p> <p>8. 기타사항 : 없음</p> <p>.....</p>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1997년 11월 14일 생활환경위원회</p> <p>1. 회부안건</p> <p>○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p> <p>2.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0월 29일,</p>
---	--

서울특별시

나. 회부일자 : 1997년 10월 30일

다. 의안번호 : 제929호

라. 상정일자 :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97.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

3. 제안설명요지(환경관리실장 : 탁병오)

□ 제안이유

○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91. 11.7일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운영·관리업무가 「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고, 조합 직원이 3개 시·도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책임감, 소속감,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최근 매립지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한 감사원 주관회의('97.7.4)에서 「지방공사설립방안」이 제시되었고, 환경부 주관 해안매립조정실무위원회('97.7.12)에서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방공사 설립에 동의하여 공사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해산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동의안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령)

○ 본 동의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의사결정지연과 업무처리의 중복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반입 및 위생매립 추진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조합에는 3개 시·도직원이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근무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속감, 책임감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그간 감사원, 수도권매립지실무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 여러 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결과 매립지운영관리의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일치

를 보고,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해산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제54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에서 결정하였음.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노사문제, 주민지원사업 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의 이의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원가가결한 바 있으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 협의결정하여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제도란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장 잘 조화시킨 독립적인 특수법인의 형태를 띤 공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20C의 가장 우수한 새로운 기업형태로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국가에서는 공사형태의 공기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자치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공사제도가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며, 특히 우리 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압력과 경영관리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적자운영, 부실경영과 관료주의적, 무사안일한 운영으로 공공성, 능률성, 자주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 현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하는 지방공사 설립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방공기업형태인 지하철공사의 적자운영, 노사문제 등에서 보더라도 공사설립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쓰레기를 담보로 한 노사 대립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됨.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를 경영하는 자의 경영마인드가 없다면 부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사설립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p>할 것으로 사료됨.</p> <p>5. 질의 및 답변: 생략</p> <p>6. 소수의견: 없음</p> <p>7. 심사결과: 원안가결(재석 16명, 만장일치)</p> <p>8. 기타사항: 없음</p> <hr/> <p>○議長 文一權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市有財産無償使用許可同意案과 首都圈埋立地地方公社設立同意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 계상 재산</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hr/> <p style="text-align: center;">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p> <p>육군 제3182부대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p>																						
<p>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p>																							
<p>회계명: 일반회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연번</th> <th colspan="4">재 산 현 황</th> <th rowspan="2">재산가액 (천원)</th> <th rowspan="2">허가기간</th> <th rowspan="2">무상대부근거</th> <th rowspan="2">대부기관</th> </tr> <tr> <th>종별</th> <th>소재지</th> <th>지목</th> <th>면적</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임야</td> <td>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 1-4</td> <td>임야</td> <td>33,057</td> <td>160,326</td> <td>'97.11.1~ 2000.11.1.</td> <td>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1호</td> <td>육군 제3182부대</td> </tr> </tbody> </table>		연번	재 산 현 황				재산가액 (천원)	허가기간	무상대부근거	대부기관	종별	소재지	지목	면적	1	임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 1-4	임야	33,057	160,326	'97.11.1~ 2000.11.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1호	육군 제3182부대
연번	재 산 현 황				재산가액 (천원)	허가기간					무상대부근거	대부기관											
	종별	소재지	지목	면적																			
1	임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 1-4	임야	33,057	160,326	'97.11.1~ 2000.11.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1호	육군 제3182부대															
<p>※ 재산가액은 '97.1.1. 현재 개별토지가격(4,850원/m²)기준 산정한 가격임.</p>																							
<p>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동의안</p> <p>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해산하고, 공기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안)을 별첨과 같이 동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매립지지방공사설립(안)</p> <p><input type="checkbox"/> 공사명칭: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칭)</p>	<p><input type="checkbox"/> 설립예정일: 미정</p> <p><input type="checkbox"/> 설립방법: 지방공기업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서울·인천·경기도가 규약 체결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p> <p><input type="checkbox"/> 자본금출자: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 설립주체인 3개시·도 협의결정</p> <hr/> <p>24. 社會福祉專門要員의 社會福祉職列早期施行促求建議案(保健社會委員會 委員長 提案)</p>																						